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37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문진석 · 김한규 · 박상혁
강경숙 · 김우영 · 진선미
백승아 · 김의겸 · 맹성규
윤건영 · 김문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

그런데 최근 일부 청구인이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그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폭언·욕설·협박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관계기관의 실태조사에서도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른바 악성민원의 주요 유형 중 하나로 확인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실의무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권자의 권리남용 금지의무나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담당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구인이 공공기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존중하고 적법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담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항 신설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청구권자”를 “청구권자의 권리와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공공기관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공개 담당자의 적법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 중 “)”를 “.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 담당자의 보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장(제30조 및 제3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생략) <u><신설></u>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와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공공기관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공개 담당자의 적법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u><신설></u>	③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 ----- ----- --. 이하 같다)----- ----- ----- -----

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6조의3(정보공개 담당자의 보

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
공개 청구권자의 폭언·폭행·
욕설·비방·협박 등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신
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공기
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이유로 해당 정보
공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제6조의3제3항을 위

반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u><신 설></u>	<u>금에 처한다.</u> <u>제31조(과태료) ①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u>
---------------------------	---